



본란의 기사는 本會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TEL : 553-094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欧洲 通商情報

가. 英国, VCR 反덤핑 조치에 대한 Review 신청 모색

1) 2월말 VCR 反덤핑 조사 종결에 뒤이어 英国은 약 1년후 反덤핑 조치에 대한 Review 신청 가능성 발표. 会員국은 反덤핑 조치가 취해진뒤 언제든지 Review 신청 가능함. 기타 関聯團體(EC 產業, 輸出業体 또는 輸入業体)는 反덤핑 조치후 1년이 지난뒤 Review 신청 가능.

2) Review 신청자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Review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Review 신청이 받아들여지나 실제로는 이러한 형식의 Review는 거의 받아들여진 경우 없음. 대부분의 Review는 反덤핑 조치 마감기간(5年) 임박해서 執行委에 의해 행해지는 反덤핑 조치 종결 타당성에 대한 Review임.

나. Color TV, CDP 케이스

1) 執行委, Color TV 反덤핑 케이스 関聯韓國業体 帳護士들과 Disclosure Meeting 개최, Color TV 예비판정은 4月末경 있을 것으로 예상됨. CDP 예비판정은 진척이 늦어져 4月 이후 결과 발표 예상.

2) 크리스마스 기간을 앞두고 급격히 增加된 韩國產 輸出物量을 겨냥하여 제기된 소급관세의 適用与否는 아직까지 분명치 않음. 금번 예비판정 지연으로 인하여 크리스마스 세일즈 物量이 소급관세 대상범위에서 제외되게 됨.(소급관세는 예비판정 발표 3個月前까지만 적용 가능) 執行委는 지금까지 소급관세를 적용한 예가 없었음.

다. Philips, 反덤핑 절차에 消費者 이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

1) 1989年 3月 14日, Financial Times는 Philips와 CEFIC(European Council of Chemical Manufacturer's Federation, 韓國產 Video Tape와 Audio Tape 덤피ング 제조업체임), 그리고 화란의 한 法律会社가 서명한 서신을 게재, 同서신에서 이들은 反덤핑 절차에 있어서 EC의 이익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決定지를 때 消費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

2) EC 法規에 따르면 덤피ング 関稅는 덤피ング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EC 產業에 피해를 주었고 따라서 EC 이익을 위해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反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임. 「EC의 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本法規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EC의 이익」 때문에 덤피ング에 대한 保護措置를 취하지 않게 된 경우도 단 한건에 불과함. EC域外의 輸出業体들은 종종 反덤핑 関稅賦課로 인한 가격 인상은 EC 消費者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이것은 EC의 이익에 反하게 되어 反덤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주장해 왔음.

라. Adam Smith 학회 反덤핑 규제 제한 요청

1) 독립기관으로서 보수압력 단체인 Adam Smith 학회는 EC 反덤핑 정책에 대한 改革 요청. 이들은 執行委가 反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前에 독립된 기구가 提訴狀을 검토,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또한 소비자 이익에 대한 피해 가능성도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어져야 하며 提訴

이유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提訴者를 벌금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英国政府로 하여금 國際貿易에 장애가 되는 輸出 自律規制 및 기타 규제조치 철폐 요구.

2) 同報告書는 또한 執行委의 反dump 정책을 「기괴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강력히 비난. 또한 執行委의 편견 및 保護主義政策에 대해 비난하고 反dump 조치에 대해 산업정책을 뒷문으로 인도하는 부적절한 조치로 비난.

3) 同報告書는 英国政府 앞으로 송부, 英国政府는 同報告書에 대해 논의하거나 執行委에 상정할 의무는 없음.

마. 홍콩, 또다시 反dump 調査對象에 포함됨

1) EC는 홍콩,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産 데님(Denim) 직물에 대한 dump 調査 개시 발표. 이것은 최근 15個月 동안 홍콩産 製品에 대해서 행해진 8 번째 dump 조사임.

2) 한편 1988年末 홍콩産 Tape에 8.1%에서 59.3%의 dump 関稅가 부과된데 대해 홍콩 政府는 EC 執行委에 Video Tape에 대한 反dump 関稅 再考를 요청. 政府가 dump 업체를 대신하여 反dump 判定에 대한 再考를 요청한 것은 극히 드문 케이스임.

바. Nakajima, 프린터에 대한 反dump 関稅 賦課에 이의 제기

1) 日本 Nakajima社는 유럽 理事会를 대상으로 日本产 프린터에 대한 反dump 関稅 賦課令에 대한 無効訴訟을 유럽 司法部에 제기. 최근 수년동안 유럽 司法府는 dump 케이스에 있어서 執行委의 증거와 方法論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本訴訟은 1988年 8月 新反dump法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주목할만한 訴訟이 될 것임.

사. EC 理事会 HDTV 토의

1) EC 產業長官들은 유럽식 HDTV 기준(norm)

을 발전시켜 世界 공용 기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계획에 지지 표명. 이것은 유럽 電子産業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짐.

1989年 4월말경 理事会에 의해 공동 전략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아. EC, HDTV 基準 競爭 돌입

1) 최근 EC는 HDTV EC 基準方式 개발을 위한 계획 승인. EC의 基準方式이 최근 開發中인 美國이나 日本의 방식에 앞서 世界 공용 기준방식으로 승인되기를 희망. HDTV의 중요성은 그 적용 범위에 있음. HDTV 적용범위는 가정용 TV의 화질 개선뿐만 아니라 인쇄, 출판, 레이다, 항공로 통제 및 기타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됨. 國際ラди오協議會(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CCIR)은 1990年 HDTV 世界 기준방식 채택을 위한 회합을 갖기로 되어 있음.

자. Hinari, Sony, Toshiba, Canon EC 現地 工場 설립계획

1) 스코틀랜드의 電子会社인 Hinari는 스코틀랜드에 14inch Color TV를 生產할 수 있는 공장 설립 계획, 지금까지 Hinari는 韓國, 日本, 台灣, 홍콩으로부터 각종 電子製品을 수입해 왔음.

2) 3個의 日本会社들이 EC內에 공장 설립 계획. 첫번째로 Sony는 이탈리아에 카세트 테이프 공장을 설립, 生產量의 80%를 輸出할 계획임. Toshiba도 휴대용 컴퓨터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물색중이라고 발표. 기타 日本 電子会社들도 현지 공장 건설 검토중. Canon은 영국에 Laser Beam Printer와 Fax M/C 제조공장 부지 물색중. Canon은 2年内에 이 공장을 가동시킬 계획임.

차. EC, 日本의 Chip 監視 시스템 修正案에 냉대

1) 日本의 对 第3国 메모리 칩 판매 감시제가 불법이라는 GATT 판정에 따라 同監視制에 대한

修正案을 제출했음. 同監視制에 대한 原提訴者였던 EC는 최근 日本의 修正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는 회의적 반응. EC의 현재 시스템에 대한 반대는 EC 내에서 가격을 인상시키기 때문임.

카. EFTA 정상회담, EC와의 유대 강화 의사 표명

1)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로 구성된 EFTA(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정상회담을 개최, EC와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 희망 의사 표명. EC와 EFTA 사이의 유대 강화 문제는 금주 両機構(EC & EFTA)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것임.

2) 오스트리아, 7月에 EC 가입신청계획 발표 예정. 가입절차는 1992年 이후에나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가입될 경우 오스트리아는 13번째 EC 회원국이 되는 것임.

타. Video Tape 確定 判定 연기

1) Video Tape 確定 判定이 2개월간 연기됨. 덤픽에 대한 確定 判定은 예비판정 발표후 4個月 이내에 발표되어야 하나 執行委 권한으로 2개월간 연기 가능. 執行委는 현재 최종 Disclosure Meeting 中으로 本 Meeting 後 관련업체들은 執行委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질 것임.

파. 프랑스, 韓国産 Color TV 간접 輸入 제한

1) EC條約 115條에 의거 執行委는 프랑스로 하여금 기타 EC国家 内에서 자유유통되는 韓国, 日本, 台湾产 Color TV의 輸入量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이에 따라 프랑스는 1989年 6月 30일 까지 韩国产 Color TV에 대해서는 2만 5,000台, 日本产 Color TV는 6만 3,000台로 간접 輸入量 제한, 프랑스는 현재 韩国, 日本, 台湾产 Color

TV 直輸入量에 대해 쿼터제 施行中.

2) 해당 CN Code(Combined Nomenclature - EC의 関税分類法으로서 HS No에 기준, 6자리 수까지는 HS No와 동일)는 다음과 같음.

8528. 1040	Color TV Projection equipment
1050	Apparatus incorporating a videophonic recorder or reproducer
1061	Color video monitors with cathod-ray tube
1071	
1073	All sizes of Color TV
1079	
1091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것 중 Screen이 없는 것으로서 Video Tuner 내장.
1098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것 중 Screen이 없는 것으로서 Video Tuner를 내장하지 않은 것.

하. 1987年 反덤핑 報告書 발행

1) 反덤핑 報告書 第6版 발행, 本報告書에는 1987年 EC의 反덤핑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록됨. 1987年 39件의 反덤핑 調査 개시, 이중 韓国産製品과 관련된 것은 5件임. 1987年末 60件의 反덤핑 조사가 진행중이었으며 20件의 조사가 종결. 종결된 20件中 8件에 反덤핑 関税 賦課, 8件에 UT 수락, 4件은 EC産業에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

거. 유럽 司法院 電子製品 関税 分類 판정

1) 유럽 司法院는 Blaupunkt社 케이스에 대해 TV 카메라와 Video Recorder 복합품으로서 가격면이나 중량면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품을 이용해 TV 프로그램만을 녹화할 수 있는 제품은 Video Recorder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

장. Blaupunkt는 이러한 제품은 TV 카메라이며 따라서 低率의 関税를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음.

2) 한편, ICT와 BFI가 제기한 訴訟에서 유럽司法府는 電子部品의 Conformify만을 점검하기 위해서 電力量을 측정하는 기구는 일반적인 電力量 측정기구와는 関稅分類가 동일할 수 없다고 판정, 이에 따라 低率의 関稅 적용.

너. 日本, EC内 活動 적극화. EC, Quota 제한 일부 철폐

1) 최근 日本 製造業體의 EC内 방계 회사수가 급증. 日本의 EC内 生産品의 현지 部品 사용률은 평균 62.8%. Matsushita는 国 및 独逸工場 生産量 增大 計劃 및 部品工場 設立計劃 발표.

2) EC, 현재 各會員國이 시행중인 日本產 製品에 대한 156個 Quota 中 68個를 수년간에 걸쳐 철회할 계획. 그러나 収益性이 높은 Motorcycle과 自動車에 대한 Quota는 계속 남아 있음.

더. DAT 製造業體들 타협

1) 日本과 유럽의 電子業體들은 거의 완벽한 음질의 음악 재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디지털 테이프의 시판에 앞서 타협점을 재모색하기 위해 회의 개최. 業體들은 기계를 개조하여 1개의 복제만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테이프에 대한 稅金賦課를 받아들이는데 합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것은 디지털 테이프가 시판될 경우 상당한 輸入減少를 염려하는 레코드 업체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

2. 美 業界의 301條 優先協商對象국 指定 建議와 그 対応

가. 概括

新貿易法 “Super 301條” 優先 協商國 선정과 관련, 지난 3月 23日 美國의 39個 生産関聯 団體의 Public Comment中 22個 团體間 韓國을 特별

히 언급 USTR에 協商對象國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관련된 단체는 美國映画協會, 知的所有權 보호 동맹, 全國食品加工協會, 全國電氣製造者協會 등 전업종을 망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農產物 輸入에 관한 사항이나 다음 2 가지 사항은 韓國의 電子產業에 관련되어 있다.

- 필름과 카메라의 對韓 輸出 장벽
 - 電子 交易에 관한 美國 電子工業協會(AEA)의 서한
- 특히 韓國의 電子製品 不公正 관행과 관련하여 AEA의 서한은 다음 사항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상당수의 電子製品이 韓國電子工業振興會의 輸入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음.
 - 30~100%의 소비세 및 30%의 방위세 등 과도한 내국세 賦課.
 - 外国人 投資家에 대한 技術 移転 강요 및 外国人의 資產 取得 제한.
 - 法的 規制는 없으나 實제로 10%의 Local Content 規定이 적용되고 있음.

나. 進行 状況

AEA가 USTR에 韓國을 協商對象國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며 이유로 上記 事項들을 검토한 결과, 韓國의 현실과는 상이한 잘못된 사실에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이 밝혀져 本會는 電子工業振興會長 名義의 下記 취지의 서한을 AEA 會長과 USTR에 보내 미국으로부터의 輸入 拡大와 호혜적 通商關係를 구축하기 위한 韓國의 노력에 이해를 축구하였다.

첫째, 「韓國은 広範囲한 輸入制限 품목 List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EIAK의 承認 없이는 輸入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韓國政府는 연차적으로 輸入自由化 施策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88. 4. 1부터 全電子製品에 대하여 100% 輸入自由化를 실시하여 왔음. 따라서 '88. 4. 1부터 EIAK가 輸入 承認하는 品目은 없다. 오히려 韓國은 半導体用 실리콘 웨이퍼 등 33個 品目에 대

하여는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을 제한하고 对美輸入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타 외화대부, 購買使節團派遣 등 对美輸入促進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对美輸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소비세 30~100% 및 방위세 30% 등 과도한 내국세 賦課에 대하여, 韓國은 電子製品의 경우 컬러 TV, 냉장고, 오디오, 세탁기, VTR, 전기전열기구, 에어콘 및 Projection TV 8個品目에 대하여 特別消費稅를 賦課하고 있으나 이를 품목은 주로 韓國에서 生產 供給되는 품목으로 国内生産業體가 主對象이며 美洲의 对韓輸出拡大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또한 이들 세율도 '89. 1에 基本 稅率이 10~40%에서 0~25%로 대폭 인하되었음.

따라서 소비세 30~100% 賦課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다만 방위세는 국방을 위한 特別目的稅로써 輸入되는 모든 품목(電子製品뿐 아니라)과 国内生産 製品에도 전부 적용하고 있으며 稅率도 特別消費稅의 30%로 '89. 1月 특소세의 인하로 실제 부담액이 대폭 경감되었음. 방위세 부담에 대하여는 韓國의 특수한 国防狀況을 고려하면 이해가 될 것으로 믿음.

셋째, 外国人 投資에 대한 技術移転 강요나 所有持分 제한에 대하여, 国内法上 外国人 投資에 대한 技術移転을 강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所有持分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음. 다만 5% 이상 投資할 경우 関係部處와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電子分野의 경우 현재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한받지 않을 것임.

넷째, Local Contents 10%의 사실상 규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韩國은 100% 수탁 가공도 許容하고 있으며 輸入쿼터 등, 物量制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ocal Content를 적용할 아무런 이유와 実益이 없음.

참고로 공공기관 購買時 팩시밀리 및 컴퓨터에 대하여 国產化率이 높은 제품을 優先 購買하는 制度를 실시한 바 있으나 컴퓨터는 '88. 1. 1부로 팩시

밀리는 '88. 7. 1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다섯째, 電子工業振興法으로 輸入抑制가 가능하다는데에 대하여, 電子工業振興法은 '86. 7. 1 폐지되었으며 輸入規制를 목적으로 이 法을 대신할 어떠한 법령도 규정된 사실이 없음. 貴側의 논거는 '86 이전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이상 貴會의 对USTR 請願內容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韩國은 여하한 경우에도 对美輸入을 규제코자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 오히려 韩國은 对美貿易不均衡의 시정을 위하여 제반조치를 강구, 추진하고 있으며 業界에 대하여도 对美輸入促進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지난번 본인이 団長으로 귀하를 방문한 바 있는 購買使節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해 주기 바람.

본인은 韓·美間의 균형된 貿易拡大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약하는 바임.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USTR에도 이러한 사실의 해명과 韩國의 기본 입장, 본인의 뜻을 전달해 주기 바람.

다. 결 론

지금에 들어 美國의 韩國에 대한 輸入規制와 市場開放 압력은 優先協商對象国 지정 시한이 임박해짐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4月 8日 美國의 3大 자동차 메이커인 클라이슬러社와 全美產業別 노조(AFLCIO)도 이에 합세 全業種에 걸쳐 파상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AEA의 견의서에서 볼 수 있듯이 美國의 주장이 대부분이 잘못된 情報나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를 두고 행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또한 우리의 对美弘報 戰略이나 활동상에 미친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때 사실을 알리려는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자세와 노력이 아쉬운 시점이라 하겠다.